

신원보증규정

제정	1993.	4.	24
개정	1993.	6.	4
개정	1995.	9.	27
개정	1995.	11.	3(개폐정리)
개정	1998.	12.	30
개정	1999.	7.	21(개폐정리)
개정	2001.	7.	27(개폐정리)
개정	2005.	5.	19
개정	2005.	12.	23
개정	2006.	12.	8(개폐정리)
개정	2007.	2.	16(개폐정리)
개정	2007.	9.	28
개정	2011.	6.	9(개폐정리)
개정	2011.	12.	30(개폐정리)
개정	2013.	4.	30(개폐정리)
개정	2014.	8.	29(개폐정리)
개정	2015.	6.	30(개폐정리)
개정	2016.	4.	7
개정	2016.	5.	24(개폐정리)
개정	2018.	12.	26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직원의 신원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업무처리
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정의) 이 규정에서 직원이라 함은 관리직원, 업무지원직원, 경영지
원직원 및 수습직원을 말한다<개정 '93.6.4, '98.12.30, '05.12.23, '07.9.28,
2018.12.26>

제3조 (신원보증보험계약의 체결의무) ①직원은 공사가 지정하는 보증보험
회사의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 <개정 '99.7.21><개폐정리 2015.
6.30>

②직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신원보증서류가 구비된 후에 발령한다.

제4조 (보험금액) 직원의 신원보증보험가입 보험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관리직원 : 3억 원 <개정 '95.11.3, '98.12.30, '05.5.19, '07. 2.16, 2016.04.07>
2. <개정 '95.9.27, '98.12.30, '05.5.19, '07. 2.16 ><개폐정리 2014. 8.29><삭제
2016.04.07>

3. <개정 '98.12.30, '05.5.19, '07.2.16><개폐정리 2014. 8.29><삭제 2016.04.07>
 4. <삭제 2011.12.30>
 5. <삭제 2011.12.30>
 6. 업무지원직원 : 2,000만원<신설 2007.9.28.>
 7. 경영지원직원 <신설 2018.12.26.>
 - 가. 연구직 : 1억원 <신설 2018.12.26.>
 - 나. 전문직 : 1억원 <신설 2018.12.26.>
 - 다. 지원직 : 2,000만원 <신설 2018.12.26.>
- [전문개정 '93.6.4]

제5조 (신원보증기간) 신원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, 매1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.

제6조 (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) ① 인사처장은 직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보증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.<개정 2001.7.27>

1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사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때 <개정 '99.7.21>
<개폐정리 2015. 6.30>
2. 현금·유가증권·물품등을 출납 보관하는 자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·유가증권·물품등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
3. 기타 보험약관에 의해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

② 제1항의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관계 직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.<개폐정리 2016. 5.24>

제7조 (보험료 보조) ①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한 직원이 납부한 보험료는 공사가 소정보험료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조할 수 있다. <개정 '99.7.21><개폐정리 2015. 6.30>

②사장이 중요직위책임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별도의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으며, 그 보험료는 전액 공사가 부담한다. <개정 '99.7.21><개폐정리 2015. 6.30>

제8조 (준용규정) 신원보증보험에 관하여는 이 규정이외에 보험계약 및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 이사장은 조합설립당시에 한하여 이 구정에 불구하고 별도로 신원보증인과 보증보험을 동시에 가입토록 조치할 수 있다.

부 칙 <1993. 6. 4>

이 규정은 1993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1995. 9. 27>

이 규정은 199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1995. 11. 3>

이 규정은 1995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1998. 12. 30>

이 규정은 1998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1999. 7. 21>

이 규정은 1999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01. 7. 27>

이 규정은 2001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〈2005. 5. 19〉

이 규정은 2005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〈2005. 12. 23〉

이 규정은 2005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〈2006. 12. 8〉

이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〈2007. 2. 16〉

이 규정은 2007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〈2007. 9. 28〉

이 규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〈2011. 6. 9〉

이 규정은 201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〈2011. 12. 30〉

이 규정은 201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〈2013. 4. 30〉

이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〈2014. 8. 29〉

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〈2015. 6.30〉

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〈2016. 4. 7〉

이 규정은 2016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2016. 5.24〉

이 규정은 2016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2018.12.26.〉

이 규정은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